

2008년도 하반기 주요 검사법령 제·개정(I)

1. 고속선기준 개정

▶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500호, 2008. 9. 8

- IMO(국제해사기구) 결의서 HSC Code(고속선코드) 개정사항을 국내기준에 수용
 - 석면함유재료 사용금지 및 고속선안전증서 비치 의무 신설
 - 운항제약사항 기재 요건 정함
 - 화재탐지기 비치요건 완화 및 고정식소화장치 설치 요건 강화
 - ECDIS(전자해도표시장치) 설치 및 고속선 운항한계 지정요건 신설

2. 선박설비기준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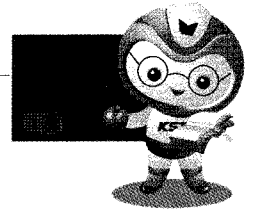
▶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562호, 2008. 10. 8

- 플래저보트(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 선박)에 대한 선원실의 높이와 닻·닻줄 및 계선줄의 비치기준 등을 완화하고, 활어의 산소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초저온산소 설비에 대한 요건 신설
 - 플래저보트 정의 신설
 - 선원실 높이 및 계선 양묘설비 비치기준 완화
 - 액화석유가스 용기 검사기준 개정 및 초저온산소 설비의 요건 신설

3. 선박기관기준 개정

▶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592호, 2008. 10. 15

- 내연기관의 '연속최대출력' 정의 현실화
- 재료시험 대상을 국제기준으로 개선토록 함
- 협약을 수용한 고장시 조치 기준 완화
- 고속기관을 설치한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중간축 기준 완화
- 육상용 내연기관의 부품 및 재료시험 방안 마련



2008년도 하반기 주요 검사법령 제·개정(1)

4.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

▶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-604호, 2008. 10. 23

- 강화검사 대상선박의 중간검사시에는 선체주요부 변경이 없는 경우 종전 정기검사시 제출된 강화검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일부 기준 완화
 - 강화검사계획서 제출 및 두께측정보고서 보관의무 간소화
 - 종강도 평가검사 완화 및 사진촬영결과물 첨부 간소화

5. 부유식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정

▶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647호, 2008. 10. 23

- 선박안전법 개정 (법률제8221호, 2007. 1. 3)에 따라 2008년 10월 1일 이후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대한 선체구조, 기타시설의 설비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
 - 검사대상, 계선 양묘설비의 산정기준, 구명설비 비치기준 정함
 - 예항설비 비치 생략 및 변소설비 설치 생략
 - 이동식 시추선에 대한 시설 및 운항요건 정함

6.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

▶ 국토해양부령 제65호, 2008. 10. 31

-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여객선을 제외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유조선외의 선박의 중간검사 시기 조정
- 도입선 및 DWT 600 미만 유조선의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 개정
- 소형선이중선체구조의 요건 개정
- 오존층과피물질과 관련하여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에 한정하여 검사 준비토록 함
-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한영 혼용증서로 변경